

	학보사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6	
			제정일		2002. 07. 10.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1/5	관리 부서	학생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위치)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 신문사는 총장 직속 기관인 신문방송국의 한 기관으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신문사(이하 ‘학보사’)라 칭하며,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학보사는 언론보도 매체로써 학보발행을 통하여 본 대학 설립정신을 선양하고, 학교의 행사와 활동에 대한 소식을 보도하여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며, 교수 및 학생의 학술교류와 관련하여 건전한 학풍조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시사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및 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 제

제3조(편제) 학보사는 발행인, 주간 및 학생임원, 정 기자, 수습기자로 구성되며, 편집부, 총무부, 학술부, 취재부, 사회부, 문화부를 둔다.

제 3 장 임 원

제4조(임원구성) 학보사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발행인 1명
2. 주간 1명
3. 운영위원 2명
4. 학생임원은 아래의 각 목과 같다.
 - 가. 편집부장 : 1명
 - 나. 총무부장 : 1명
 - 다. 학술부장 : 1명
 - 라. 취재부장 : 1명
 - 마. 사회부장 : 1명
 - 바. 문화부장 : 1명

제5조(임원선출 및 시기) ① 주간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 기자들의 추천으로 주간의 승인을

	학보사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6		
		제정일	2002. 07. 10.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2/5	관리 부서	학생처

받는다.

③ 편집부장은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편집장이 정기자들과 의하여 추천하며 주간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임원임기 및 보선) ①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학생임원의 임기는 3학년 1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④ 임기 만료전 학생임원이 궐위된 경우, 제4조 3호의 순서에 입각하여 겸임한다.

⑤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주간은 대내·외적으로 학보사를 대표하며, 교수논단 및 논설위원 위촉 등을 포함하여 학보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은 학보사의 제반 업무에 관한 협조하며, 학보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를 한다.

③ 편집부장은 학보사의 전 기자를 대표하며, 주간의 승인을 받아 학보제작에 따른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④ 총무부장은 편집부장을 보좌하며, 학보사의 재정 및 일반 사무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⑤ 학술부장은 학내·외 학술 논단에 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⑥ 취재부장은 학내·외 기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⑦ 사회부장은 사회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⑧ 문화부장은 문화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제 4 장 기 자

제8조(구성) 정 기자 약 6명과 수습기자 약 6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수습기자 선발 및 시기) ① 본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써 학년 초 학보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선발한다.

② 학기 중 수습기자의 결원 및 증원 등으로 재 선발을 요할 때는 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

③ 주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간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수습기자를 선발 할 수 있다.

	학보사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6	
		제정일		2002. 07. 10.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3/5	관리 부서	학생처

제10조(정 기자 선발 및 시기) ① 2학기 기말시험 이전까지 수습을 마친 수습기자 중 학생 임원의 심의를 거쳐 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선발한다.

② 주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간의 재량에 의하여 정 기사를 선발할 수 있다.

제 5 장 학 보

제11조(학보발행) 학보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매년 1학기 개강 전 까지 학생임원의 심의를 거쳐 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12조(학보제작) 주간의 승인이 있는 후, 편집회의 결과에 따라 편집부장의 주관 하에 제작한다. 편집회의, 1차 교정, 2차 교정, 1차 기획사 방문, 주간 교수와 교정 및 2차 기획사 방문의 과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정의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주간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학보인쇄) 주간의 승인이 있는 후 인쇄한다.

제14조(학보배포) 총장의 승인이 있는 후 배포한다.

제 6 장 회 의

제15조(회의 및 시기) ① 편집회의는 학보 발행 약 20일 이전에 개최하며, 주간 및 각 부장의 참여로 진행된다. 문제가 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각 부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간이 최종 결정한다.

② 기자회견의는 편집회의 이전에 개최하며, 각 부서별로 부장의 주관 하에 개최한다. 회의 결과는 부장을 통하여 편집회의에 회부한다.

③ 기타 회의는 학보사 자체 규칙에 의하여 편집장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회의 결과는 주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7 장 포 상 및 징 계

제16조(포상) 학보사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될 때, 주간이 학교에 추천하여 총장이 포상한다.

	학보사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6	
			제정일		2002. 07. 10.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4/5	관리 부서	학생처

제17조(징계) ① 학보사 자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기자는 근신에 처한다.

② 2회의 근신을 받은 기자는 경고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는 제명한다.

1.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기자
2. 학보사 내규를 지키지 않은 기자
3.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기자
4. 학보사 비품을 고의 파손하거나, 주간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기자
5. 대내 · 외적으로 학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학생 신분 이탈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기자

④ 제 ③항의 경우, 1내지 2호는 편집부장의 직권으로, 3호는 주간의 직권으로 징계한다.

제 8 장 교 육

제18조(교육) 수습기자의 교육은 각 부장들의 협의 하에 교육 내용을 작성한 후, 주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9 장 재 정

제19조(재정) ① 대학은 학보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보사에 관련된 모든 재정은 학보사 총무부장이 편집부장과 협의를 거친 후, 주간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보사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6		
		제정일	2002. 07. 10.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5/5	관리 부서	학생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